

2025

한국환경보전원

인권영향평가 결과보고서

2025.11.

제 출 문

한국환경보전원 원장 귀하

이 보고서를 “2025년도 한국환경보전원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결과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25. 11.

한국경영인증원

Ⅲ

인권영향평가 실행

1

인권영향평가 실시 개요

(1) 실시 주체 및 범위

□ 평가주관 : (내부) 한국환경보전원 인사관리처

(외부) 한국경영인증원 평가위원

□ 실시기간 : 2025년 9월 1일 ~ 2025년 11월 30일

□ 주요활동

○ '25. 09. 02 : 인권영향평가 Kick-off

○ '25. 09. 08 ~ 09. 17 : 인권영향평가 지표개발 및 확정

○ '25. 09. 23 : 인권영향평가 지표교육

○ '25. 09. 24 ~ 10. 01 : 평가대상 담당자 자체평가 실시

○ '25. 10. 22 : 인권영향평가 외부전문위원 현장실사

○ '25. 11. 30 : 최종보고서 제출

□ 평가대상

○ 기관운영 : 한국환경보전원(내/외부 이해관계자)

○ 주요사업 : 한강수계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 역무대행사업, 환경교육 강화 법정대
행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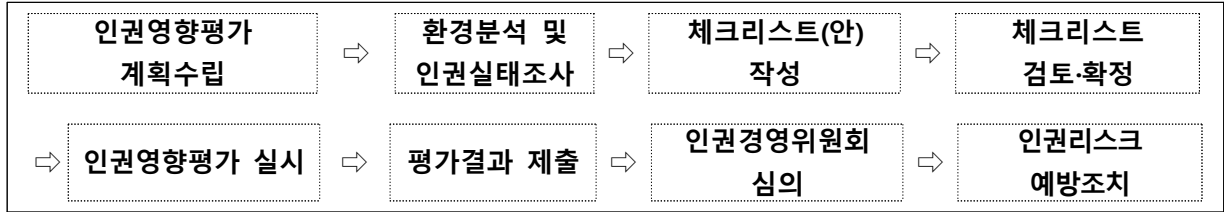
□ 평가범주

○ (기관운영) 인권경영체제, 고용상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강제노동, 산
업안전, 공급망 관리, 환경권, 고객인권 및 직장 내 인권보호 등 공공기관 인권영
향평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선정한 인권측면을 기초로 기관의 경영활동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 실시

○ (주요사업) 기관의 사업수행이 인권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한 평가
실시

(2) 평가절차 및 방법

□ 평가절차



□ 평가방법

- 국가인권위원회 인권경영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한 지표와 원칙, 사례를 참고하여 기관운영 평가 체크리스트별 객관적 증빙자료와 평가기준을 표준화하고 표준화된 평가방법 및 기준을 제공하여 같은 질문에 대하여 다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을 최소화
- 기관의 주요 인권측면을 선정하여 기관운영 평가를 위한 체크리스트 초안 마련 및 검토
- 인권경영 추진 담당자 및 관리자, 실무자를 대상으로 지표교육을 실시하여 인권영향평가의 중요성과 평가방법에 대하여 숙지하고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 지표에 대한 의견수렴을 통해 최종 평가지표 확정
- 내부 자체평가를 거친 후 외부전문가의 현장실사를 통해 “예”로 응답한 지표의 객관적 증빙자료를 확인하고, “아니오” 답변에 해당하는 지표가 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확인(개선과제 도출 중점)
- 평가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평가지표의 특성상 서로 다른 두 집단이 독립적으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실무상 한계를 감안하여 같은 지표에 대하여 실무담당자의 인터뷰를 실시하여 평가
- 인권경영 전담부서인 인사관리처 주도하에 현장평가 결과를 인권경영 협력부서(관련부서)에 배포하여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수정 의견을 반영
- 최종 취합된 진단 결과 및 증빙자료에 대하여 인권경영위원회 의견을 수렴하여 진행하고 이에 대한 개선과제를 도출

□ 중대성 평가

- 인권영향평가를 통해 식별된 여러 인권이슈를 분석하여 대응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이며, 인권이슈를 일거에 해결하기는 어려우므로 ‘중대성 평가’를 통해 인권경영 개선의 효율성을 추구함
- 중대성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피해자의 권리 관점에서 침해의 심각성(severity) (규모, 범위, 회복 가능성)과 발생가능성(likelihood)을 기준으로 주요 인권이슈를 도출함
- 인권영향평가의 본질적인 목적은 주요 인권이슈를 도출하고 그에 대한 실효적인 대책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것에 있으며, 체크리스트 평가 결과에 따른 항목별 득점과 종합 점수는 최종결과물이 아닌 참고사항임을 양지하되, 점수 산출이 주요 인권 이슈 도출에 방해로 작용하지 않도록 경영진의 이해와 관심이 필요함

2 인권영향평가 주요사업 선정

□ 주요사업

- 한국환경보전원은 ‘한강수계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 역무대행사업’와 ‘환경교육 강화법정대행사업’을 주요사업으로 선정함

□ 주요사업 선정 목적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주요사업의 특성상 사업수행 과정에서 ① 사업의 인권체제 ② 공정운영 ③ 안전보장 ④ 환경권 보장 ⑤ 근로자인권보호 등의 인권침해 요소를 파악하여 이해관계자에게 미치는 영향의 정도가 어떠한지를 점검할 필요가 있음

□ 주요사업 선정 기준

- 공공기관 인권경영매뉴얼에 의하면 주요사업 선정 시 중점 추진사업 여부, 이해관계자 효율성, 지역이슈 연계성, 파급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하고 있음

평가항목	정의
① 이해관계자 효율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관련되어 있는가? - 특정한 이해관계자에게 국한되어 있지는 않은가?
② 지역이슈 연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이 지역주민, 환경, 최근 보도사항 등 주요 관심 사항이 반영되는 사업인가?
③ 파급영향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사업으로 선정 시 기관의 지속발전 계획에 기여하는 바가 높은가?
④ 포괄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기관의 사업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인권을 확인하기 위해 국내법상에서의 권리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 인정된 규약에 따른 확인을 해 보았는가? (ILO협약, 국제인권조약 등) - 공공기관이 직접 야기하거나 기여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잠재적인 영향도 포함하여 고려할 수 있는가? - 식별된 부정적인 인권영향의 원인과 정도를 분석하고 그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는 대응계획 등을 마련할 수 있는가?
⑤ 중대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권영향평가 사업 선정 시 식별된 부정적인 인권영향에 대응할 때 우선순위를 정하는 기준이 되는 것인가? - 부정적인 인권영향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고, 가장 심각할 것으로 예측되는 사업을 선택하였는가? - 심각성과 발생가능성 기준이 우위에 있는가?

□ 주요사업 선정 사유

- 국가인권위원회 공공기관 인권경영매뉴얼은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할 주요사업 선정 시 기관의 주력사업 또는 대표사업 여부, 신규사업 여부, 경영활동 전반을 포함하는 사업인지 여부, 향후 사업의 중요도 등 기관의 지속가능 발전을 도모하는 사업인지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도록 함
- ‘한강수계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 역무대행사업’과 ‘환경교육 강화 법정대행사업’은 이용자 및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사업으로 그 파급력 등을 고려하였을 때 사업의 대표성과 시의성이 높아 2025년 인권영향평가 대상 주요사업으로 선정함

3 인권영향평가 지표 구성

(1) 평가지표 개발 및 확정

기관운영 평가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공공기관 인권경영매뉴얼 내 인권영향평가 체크리스트를 통해 선정 한 주요 인권측면을 기반으로 대내·외 인권환경과 최신 인권경영 트 랜드를 반영하여 연구원 특성에 맞는 지표를 개발
주요사업 평가지표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상사업 관련 자료 및 문헌 분석을 통해 신규 지표를 개발 주요사업 관련 이해관계자의 실질적·잠재적 인권리스크를 진단할 수 있도록 대상사업 특성을 고려한 주요사업 지표개발

(2) 기관운영 평가지표

기관운영 평가지표 확정

- 인권경영 가이드라인과 공공기관 인권경영매뉴얼 체크리스트를 통해 선정한 주요
인권측면을 기반으로 미디어 리서치, 관계자 인터뷰, 조직 및 업무현황 조사,
인권실태조사 등 평가지표 고도화 과정을 통해 9개 분야 23개 항목 129개
세부지표를 확정

기관운영 평가지표 (9분야 23개 항목 129개 지표)

No	분야	항목수/지표수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5개/41개
2	고용상의 비차별	3개/14개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개/7개
4	강제노동의 금지	1개/8개
5	산업안전 보장	3개/12개
6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2개/8개
7	환경권 보장	3개/13개
8	고객인권 보호	1개/6개
9	직장 내 인권보호	4개/20개

□ 기관운영 세부 평가지표

No	분야	항목	지표수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인권존중 정책선언	41
		인권영향평가 정기적 실시	
		인권경영제도화를 위한 필요조치	
		인권경영 성과	
		구제절차 마련	
2	고용상의 비차별	고용의 비차별	14
		고용상의 남녀비차별	
		비정규직 근로자 비차별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노동조합 부재시 대안적 조치	7
4	강제노동의 금지	강제노동 금지	8
5	산업안전 보장	임산부 및 장애인 등 보호	12
		필수장비 제공 및 교육실시 등	
		산업재해 피해근로자 지원	
6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협력회사 등의 인권침해 예방	8
		보안담당직원에 의한 인권침해 방지	
7	환경권 보장	환경경영체제 수립 및 유지	13
		환경정보의 공개	
		비상계획 수립	
8	고객인권 보호	고객정보 보호	6
9	직장 내 인권보호	직장 내 괴롭힘 금지	20
		직장 내 성희롱 금지	
		장애인근로자 보호	
		감정노동근로자 보호	

(3) 주요사업 평가지표

주요사업 평가지표 확정

○ 공공기관 인권경영매뉴얼에 따라 기관의 대내·외 환경 및 중장기전략을 바탕으로 중점 추진사업, 다양한 이해관계자, 파급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한강수계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 역무대행사업’ 분야 5개 항목 18개 지표, ‘환경교육 강화 법정 대행사업’ 분야 4개 항목 14개 세부지표 개발 및 확정

주요사업 평가지표

No	사업	항목수 / 지표수
1	한강수계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 역무대행사업	5개 / 18개
2	환경교육 강화 법정 대행사업	4개 / 14개

주요사업 세부 평가지표

No	사업	항목	지표수
1	한강수계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 역무대행사업	사업의 인권체제	18
		공정운영	
		안전보장	
		환경권보장	
		근로자인권보호	
2	환경교육 강화 법정 대행사업	사업의 인권체제	14
		공정운영	
		안전보장	
		근로자인권보호	

(4) 인권영향평가 점수 산정

□ 지표별 점수 산정기준

○ 세부 지표별 확인 결과에 대한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응답을 수치화하여 인권영향평가 결과를 정량화

구분	평가기준	배점
예	• 지표의 내용이 충분히 실행되고 규정 및 증빙자료가 인정되는 경우	2
보완필요	• 지표의 내용이 실행되고 있으나 규정이나 증빙자료가 미비한 경우 • 지표의 내용이 실행된 적은 없으나 문서화된 계획이 있는 경우	1
아니오	• 지표의 내용이 실행된 적이 없으며 문서화된 계획도 없는 경우	0
정보없음	• 지표의 내용이 실행되었다고 하나 실행 증빙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 지표의 내용이 실행 예정이라고 하지만 문서화된 계획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0
해당없음	• 지표의 내용이 현재까지 관련성이 없으며 앞으로도 관련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 세부 지표별 점수 부여기준

구분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배점	2점	1점	0점	0점	평가제외

※ 평가 불가능한 지표(해당없음)는 평가에서 제외

* 해당없음 : 기관 운영범위 및 업무 내용과 관련성이 없거나 앞으로도 거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 항목별 지표 득점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평균점수 산출

$100\text{점 단위 환산방법} = \frac{\sum(\text{해당항목 지표 점수})}{(2 \times \text{해당항목 지표 수})} \times 100$
--

IV

인권영향평가 결과

1

인권영향평가 종합

(1) 기관운영 분야 : 98.4% (100% 기준)

-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노동의 금지, 산업안전 보장,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환경권 보장 및 고객인권 보호 분야는 매우 우수
-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및 직장 내 인권보호 분야는 일부 개선 필요

(2) 주요사업 분야(한강수계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 역무대행사업) : 100.0% (100% 기준)

- 사업의 인권체제, 공정운영, 안전보장, 환경권 보장 및 근로자 인권보호 등 모든 분야에서 매우 우수

(3) 주요사업 분야(환경교육 강화 법정대행사업) : 100.0% (100%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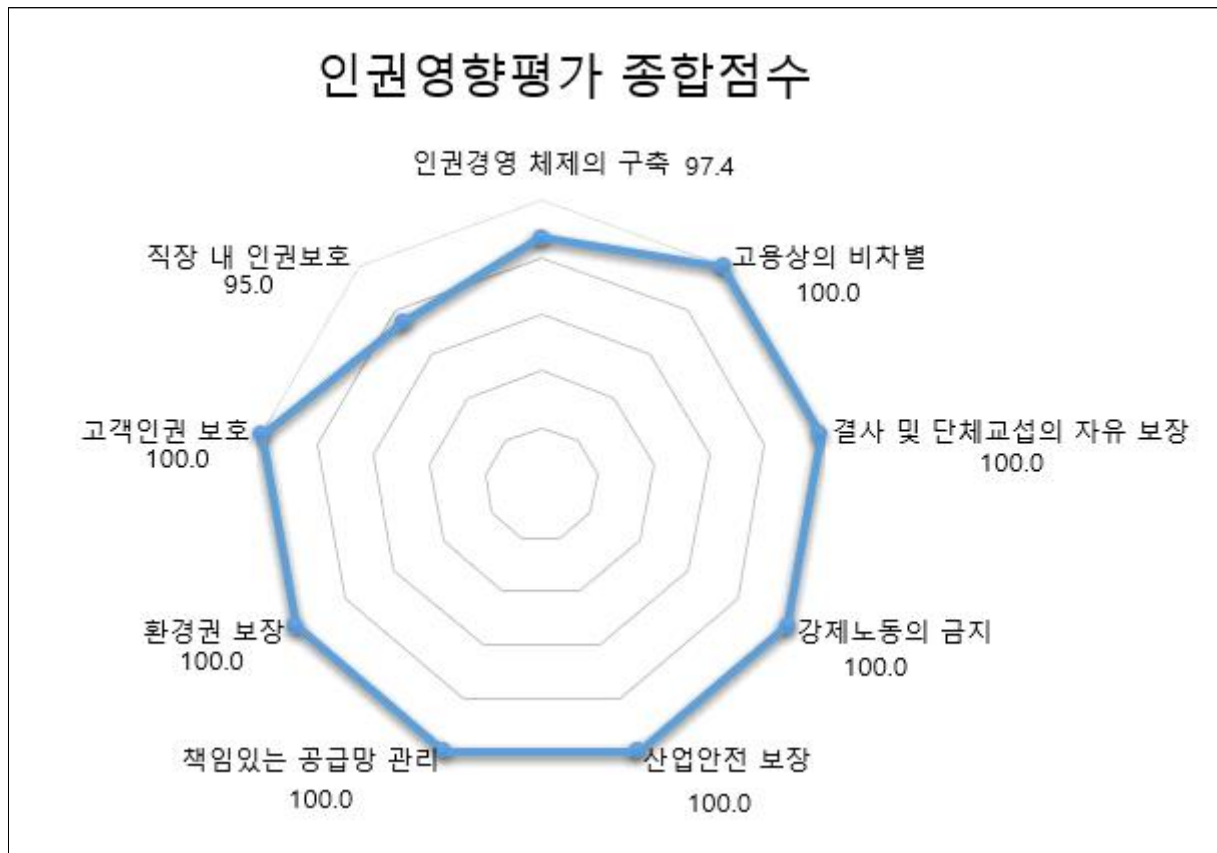
- 사업의 인권체제, 공정운영, 안전보장 및 근로자인권보호 등 모든 분야에서 매우 우수

2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결과

(1) 기관운영 종합결과

□ 종합 점수 : 98.4% (244점¹⁾ 중 240점 획득)

- ▶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종합결과 98.4%로 매우 우수하게 운영
- ▶ 고용상의 비차별,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강제노동의 금지, 산업안전 보장,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환경권 보장 및 고객인권 보호 분야는 달성률 100%로 매우 우수하게 운영
- ▶ 인권경영 체계의 구축 및 직장 내 인권보호 분야는 일부 개선 필요



1) 조정배점('해당없음' 제외) 기준

No	분야	결과			
		배점	조정배점	득점	달성률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82	78	76	97.4%
2	고용상의 비차별	28	28	28	100.0%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14	14	14	100.0%
4	강제노동의 금지	16	16	16	100.0%
5	산업안전 보장	24	24	24	100.0%
6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16	6	6	100.0%
7	환경권 보장	26	26	26	100.0%
8	고객인권 보호	12	12	12	100.0%
9	직장 내 인권보호	40	40	38	95.0%
총점		258	244	240	98.4%

※ 점수 산출식 : [(예×2점)+(보완필요×1점)+(아니오×0점)+(정보 없음×0점)]÷(해당 없음 제외한 전체문항×2점)

(2) 기관운영 점검 집계결과

□ 총 129개 지표 중 예 118개, 보완필요 4개, 해당없음 7개로 집계됨

- (보완필요)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분야 및 직장 내 인권보호 4개 항목은 주요 개선과제에 반영
- (개선과제) 지표별 미이행 과제(‘아니오’, ‘보완필요’, ‘정보없음’)에 대한 세부 개선과제를 도출하였으며, ‘예’로 이행되는 사항에 대하여도 잠재적 인권위험 요소로 판단되는 경우 이행강화를 위한 권고사항 도출 가능함

<기관운영 인권영향평가 종합진단 결과>

No	분야	평가결과					계
		예	보완필요	아니오	정보없음	해당없음	
1	인권경영 체제의 구축	37	2	0	0	2	41
2	고용상의 비차별	14	0	0	0	0	14
3	결사 및 단체교섭의 자유 보장	7	0	0	0	0	7
4	강제노동의 금지	8	0	0	0	0	8
5	산업안전 보장	12	0	0	0	0	12
6	책임있는 공급망 관리	3	0	0	0	5	8
7	환경권 보장	13	0	0	0	0	13
8	고객인권 보호	6	0	0	0	0	6
9	직장 내 인권보호	18	2	0	0	0	20
합계		118	4	0	0	7	12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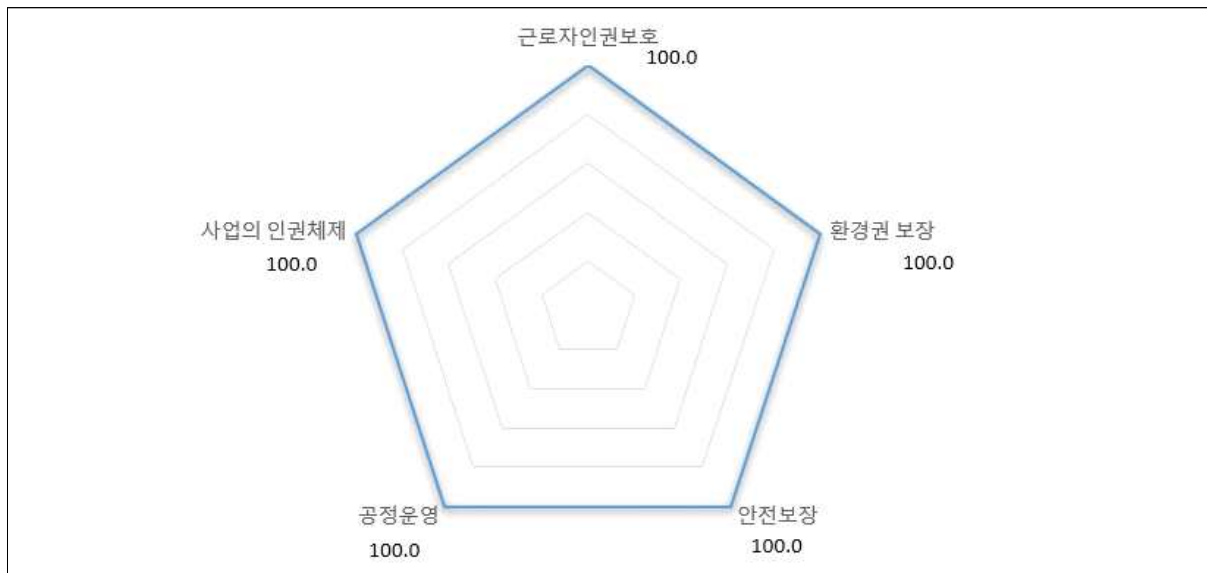
3 주요사업 인권영향평가 결과

1. 주요사업 평가결과 : 한강수계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 역무대행 사업

☐ 종합 점수 : 100.0% (36점²) 중 36점 획득)

▶ ‘한강수계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 역무대행사업’에 대한 사업의 인권체제, 공정운영, 안전보장, 환경권 보장 및 근로자 인권보호 등 모든 분야에서 매우 우수하게 운영

☐ ‘한강수계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 역무대행사업’ 종합 평가



No	분 야	결과			
		배점	조정배점	득점	달성률
1	사업의 인권체제	6	6	6	100.0%
2	공정운영	6	6	6	100.0%
3	안전보장	12	12	12	100.0%
4	환경권 보장	6	6	6	100.0%
5	근로자인권보호	6	6	6	100.0%
총점		36	36	36	100.0%

※ 점수 산출식 : [(예×2점)+(보완필요×1점)+(아니오×0점)+(정보 없음×0점)]÷(해당없음 제외한 전체문항×2점)

2) 조정배점(‘해당없음’ 제외) 기준

□ ‘한강수계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 역무대행사업’ 점검 집계결과

○ 총 18개 지표 중 예 18개로 집계됨

<한강수계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 역무대행사업 인권영향평가 종합 진단결과>

No	분 야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계
1	사업의 인권체제	3	0	0	0	0	3
2	공정운영	3	0	0	0	0	3
3	안전보장	6	0	0	0	0	6
4	환경권 보장	3	0	0	0	0	3
5	근로자인권보호	3	0	0	0	0	3
합 계		18	0	0	0	0	18

□ ‘한강수계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 역무대행사업’ 평가 결과

(평가요약)

- 사업은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사업 과정에서 부정적 인권 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한강수변생태관리단 인권지킴이 담당자 지정, 민원 담당자 심리 안정 보호 교육 프로그램 등)
- 이해관계자는 임직원, 지역주민, 협력업체 등이며, 고객의 소리, 신고센터 등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임
- 사업은 용역업체 계약시 국가계약법에 의거하여 선정 평가함으로써 과정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기하고 있음
- 사업은 토지 등 매수 및 수변녹지 조성·관리 업무처리 지침, 한강수계 수변녹지 조성·관리사업 역무대행 업무편람 등에 의거 주민의견 수렴회, 지역주민 책임제 플로깅 등을 통해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음
- 고객의 소리, 신고센터 등을 통해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이의, 애로사항,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하고 있음

- 사업은 매수토지 관리사업 안전관리 지침 및 안전보건관리 계획에 의거 주기적으로 안전점검 시행을 통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음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사고유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 사업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적절하고 시의성 있는 정보를 수집하고 평가하고 있음(생태 모니터링)
- 사업은 환경교육을 통해 보전원의 환경 성과를 위한 활동을 추진함(수풀로 탐방 프로그램, 찾아가는 수풀로 교육 운영 및 콘텐츠 보급, 한강수계 수풀로 학생체험 프로그램 등)
- 사업은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며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있음(한강수계 매수토지인 왕대리 72-5 일대 소규모환경영향평가)
- 사업은 직무상 스트레스를 감소하기 위해 심리·정서적 안정 및 직무 효율성 극대화를 지원하는 복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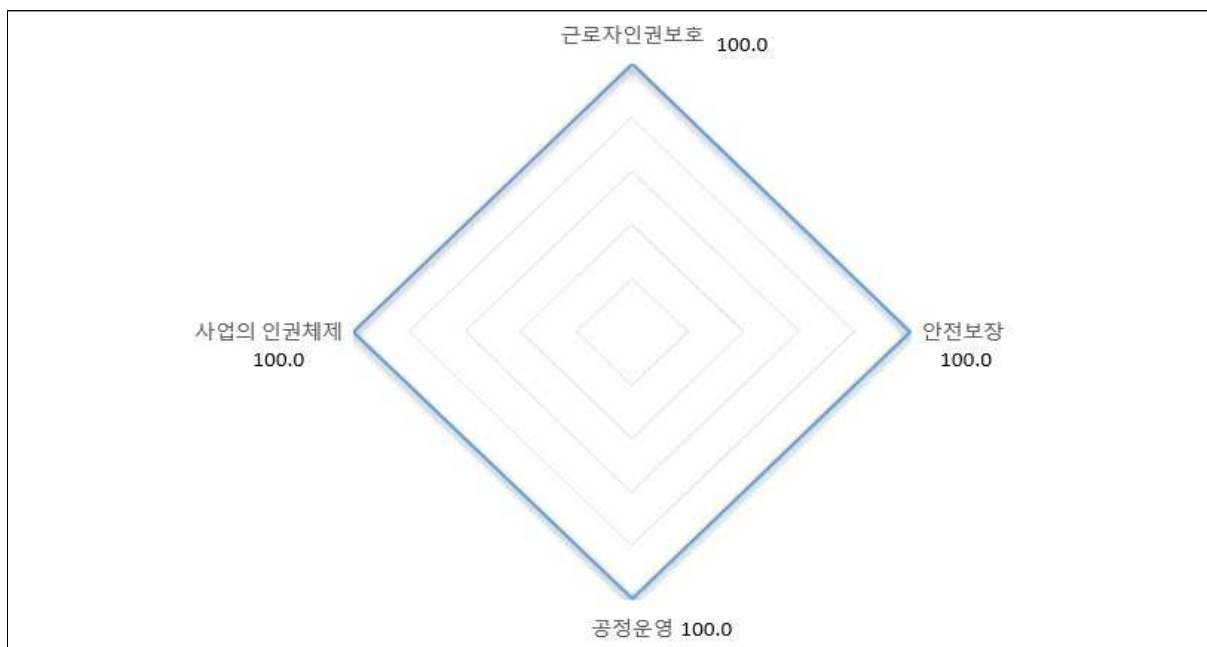
결과 그래프	달성률(%)		
<p>한강수계 수변녹지조성관리사업 역무대행사업</p> <p>사업의 인권체제 공정운영 안전보장 환경권 보장 근로자인권보호</p> <p>0.0 20.0 40.0 60.0 80.0 100.0</p>	No	항 목	계
	1	사업의 인권체제	100.0
	2	공정운영	100.0
	3	안전보장	100.0
	4	환경권 보장	100.0
	5	근로자인권보호	100.0
	전 체		100.0

2. 주요사업 평가결과 : 환경교육 강화 법정대행사업

☐ 종합 점수 : 100.0% (28점³) 중 28점 획득

▶ ‘환경교육 강화 법정대행사업’에 대한 사업의 인권체제, 공정운영, 안전보장 및 근로자 인권보호 등 모든 분야에서 매우 우수하게 운영

☐ ‘환경교육 강화 법정대행사업’ 종합 평가



No	분 야	결과			
		배점	조정배점	득점	달성률
1	사업의 인권체제	6	6	6	100.0%
2	공정운영	6	6	6	100.0%
3	안전보장	10	10	10	100.0%
4	근로자인권보호	6	6	6	100.0%
총점		28	28	28	100.0%

※ 점수 산출식 : [(예×2점)+(보완필요×1점)+(아니오×0점)+(정보 없음×0점)]÷(해당없음 제외한 전체문항×2점)

3) 조정배점(‘해당없음’ 제외) 기준

□ ‘환경교육 강화 법정대행사업’ 점검 집계결과

○ 총 14개 지표 중 예 14개로 집계됨

<환경교육 강화 법정대행사업 인권영향평가 종합 진단결과>

No	분 야	평가결과					
		예	보완 필요	아니 오	정보 없음	해당 없음	계
1	사업의 인권체제	3	0	0	0	0	3
2	공정운영	3	0	0	0	0	3
3	안전보장	5	0	0	0	0	5
4	근로자인권보호	3	0	0	0	0	3
합 계		14	0	0	0	0	14

□ ‘환경교육 강화 법정대행사업’ 평가결과

(평가요약)

- 사업은 참여하는 모든 이해관계자의 인권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을 목표로하고 있으며, 사업 과정에서 부정적 인권요인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 이해관계자는 사회·학교 환경교육보전원·단체, 일반 국민 등이며, 고객의 소리, 신고센터, 업무협의회, 운영위원회, 간담회 등 의사소통 체계를 구축하여 운영 중임
- 사업별 교육 접수 및 평가 등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 공정하게 운영·관리하고 있음
- 특히, 모든 시민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환경학습과정에 참여할 수 있고 환경교육 관련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국가환경교육 통합플랫폼 운영을 통해 공정하게 운영하고 있음(환경교육학습 플랫폼 단짠, 유튜브, 인스타그램 등 채널을 운영)
- 고객의 소리, 신고센터 등을 통해 사업수행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 이의, 애로사항, 개선의견을 수렴하여 사업에 반영하고 있으며, 국가환경교육 통합플랫폼, 환경교육사 자격평가 시스템 등 1:1 문의 대응을 통한 의견조회 및 반영하고 있음
- 사업은 환경교육사업 운영에 관한 안전관리 계획에 의거, 환경교육 시설 및 차량에 대한 보험 가입, 안전관리 및 대응 매뉴얼 마련 및 관리 등을 통해 안전관리를 철저히 시행하고 있음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다양한 사고유형에 대한 위험성평가를 시행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음
- 사업은 직무상 스트레스를 감소하기 위해 심리·정서적 안정 및 직무 효율성 극대화를 지원하는 복지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음

(권고의견)

- 권고의견 없음

결과 그래프	달성률(%)		
<p>환경교육 강화 법정대행사업</p> <p>사업의 인권체제 공정운영 안전보장 근로자인권보호</p> <p>0.0 20.0 40.0 60.0 80.0 100.0</p>	No	항 목	계
	1	사업의 인권체제	100.0
	2	공정운영	100.0
	3	안전보장	100.0
	4	근로자인권보호	100.0
	전 체		100.0

VI

중대성 평가

1 중대성 평가개요

- 국가인권위원회는 2014년 ‘인권경영 가이드라인 및 체크리스트’, 2018년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2022년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 등을 제작 및 권고하여 공공기관(나아가 민간기업)에서 인권경영을 내재화하고, 인권경영 관련 내용을 공시(보고)하도록 견인함
- 공공기관 인권경영 매뉴얼 및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 지침에 따르면 해당연도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로서 식별된 주요 인권이슈를 보고해야 하며, 주요 인권이슈는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선정되어야 함
 - ‘주요 인권이슈’란 인권영향평가 과정에서 드러난 인권이슈 중에서 중대성 평가를 통해 기관(기업)이 해당연도에 대응하기로 결정한 인권이슈를 의미하며, 이러한 의미에서 주요 사업과는 명백히 구분됨
 - ‘주요 인권이슈’는 인권영향평가의 최종 결과물로 활용됨
- 중대성 평가를 위해 1) 이해관계자의 요구사항 2) 대내·외 환경변화를 바탕으로 하여 이슈들을 파악하고 중대성 평가기준에 따라 해당 연도의 인권경영 주요 이슈를 선정함

2 중대성 평가기준

- 국가인권위원회의 인권경영 보고 및 평가지침(2022년) 및 공공기관 인권경영 가이드북(2025년)에 의해 중대성 평가를 실시함
- 중대성 평가는 인권영향평가를 기반으로 인권영향전문평가단이 평가하되, 기관 특성 및 현황을 고려하기 위하여 한국환경보전원 인사관리처의 검토를 통해 최종 점수를 산출함
- ‘중대성 평가’란 인권영향평가의 결과로써 식별된 여러 인권이슈 중에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 우선적으로 ‘주요 인권이슈’를 선정하는 절차를 말함. 기관이 인권

이슈를 일거에 해결하기는 어려우므로 ‘중대성 평가’를 통해 인권경영 개선의 효율성을 추구함

- 중대성 평가는 식별된 인권 이슈를 분석하여 대응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과정이며, 이때 피해자의 권리 관점에서 침해의 심각성(severity)(규모, 범위, 회복 가능성)과 발생가능성(likelihood)을 기준으로 주요 인권이슈를 선정함

[중대성 평가방법]

요소		척도	판단기준
심각성	①규모(정도) *리스크가 얼마나 중대하고 심각한지	상	• 인권침해가 개인과 공동체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인 행복에 대해 중대한 영향을 수반함. 대상이 되는 공동체가 특히 취약함
		중	• 인권침해가 개인과 공동체의 신체적, 정신적, 정서적 행복에 대해 중간 정도의 영향을 수반함
		하	• 인권침해가 피해자의 생활에 대한 장기적 또는 실질적인 영향을 수반하지 않고, 취약한 입장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 않음
	②범위 *리스크의 영향을 받는 인원수	상	• 영향받는 사람들이 다수임. 임직원, 가족, 인근 주민까지 포함됨
		중	• 영향받는 사람들이 중간 정도의 인원수임
		하	• 영향을 받는 인원이 소수임
	③회복가능성 *리스크에 노출되기 전의 상태로 회복시킬 수 있는 한계	상	•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인권침해의 영향을 시정할 수 없음
		중	• 즉시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인권침해의 영향을 시정할 수 없게 될 가능성이 높음
		하	• 인권침해를 완전히 시정하기 위해 즉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없음
발생가능성	상	• 사업활동에서 리스크가 매년 수차례 발생하고 있고, 재발할 가능성이 매우 높음	
	중	• 사업활동에서 리스크가 수차례 발생하였고, 해당 업계에서 과거에 발생한 적이 있음	
	하	• 사업활동에서 리스크가 발생한 적은 없지만, 해당 업계에서 과거에 발생했을 가능성이 있음	

- 중대성 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상기 평가요소 중 ‘심각성’은 규모, 범위, 회복가능성 등 3개의 요소를 각 3개(상, 중, 하)의 척도로 구분하여 해당 등급 점수를 부여함으로써 최대 9점의 점수를 부여하고, 발생가능성은 상, 중, 하로 구분하여 최대 3점의 점수를 부여함
- 중대성 평가 결과 심각성과 발생가능성에 대한 등급별 점수를 합산하여 합계 점수가 높을수록 주요 인권이슈 선정에 있어 우선순위를 부여받음

* 중대성 평가 점수 = (심각성) + (발생가능성)
 * 중대성 평가 수준
 - 총점 10~12점 : 상(고위험) ☞ 즉시 대응 필요
 - 총점 7~9점 : 중(중위험) ☞ 정기적 모니터링 및 계획수립 필요
 - 총점 4~6점 : 하(저위험) ☞ 주기적 검토 및 예방조치 필요

평가등급별 판단기준			중대성 평가 수준				
요소	등급	판단기준	심각성	발생가능성	점수 (총점)	수준	
심각성	규모 (정도)	3	중대한 영향(HIGH)	9	3	10~12점	상 (고위험)
		2	중간 정도의 영향(MEDIUM)				
		1	낮은 영향(LOW)				
	범위	3	다수의 인원	7	2	7~9점	중 (중위험)
		2	중간 정도 인원				
		1	소수의 인원				
	회복 가능성	3	높음(HIGH)	5	1	4~6점	하 (저위험)
		2	보통(MEDIUM)				
		1	낮음(LOW)				
발생 가능성	3	높음(HIGH)	4	1	4~6점	하 (저위험)	
	2	보통(MEDIUM)	3				
	1	낮음(LOW)					

3 중대성 평가결과

□ 한국환경보전원 중대성 평가결과

구분	항목	중대성 평가				주요 인권 이슈	
		심각성	발생 가능성	총점	수준		
인권영향평가							
기관 운영	인권경영 체제 구축	인권경영 구제절차 운영의 실효성 제고	8	2	10	상	○ (중복)
	직장 내 인권보호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대응매뉴얼 마련	5	2	7	중	
		직장 내 성희롱 성폭력 예방 매뉴얼 마련	7	3	10	상	○
		고객응대업무 종사자 보호를 위한 매뉴얼 마련	5	1	6	하	
인권실태조사							
		조직구성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7	3	10	상	○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대면)							
		법정의무교육 외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정기 인권교육 실시	6	1	7	중	
		인권구제절차 접근용이성과 효과성 제고를 위한 적극적인 홍보와 안내	8	2	10	상	○ (중복)
		장시간근로 개선을 위한 방안 마련	5	1	6	하	
주요 인권이슈 선정							
○ 중대성 평가 결과 최종 합계 점수가 높은 ①인권경영 구제절차 운영의 실효성 제고(중복), ②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매뉴얼 마련, ③조직구성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 등 총 3개의 주요 인권이슈를 선정함							

VIII 종합평가 의견

- 한국환경보전원은 인권영향평가를 실시함에 있어 공공기관 인권경영매뉴얼 및 한국경영인증원에서 개발한 기관운영 체크리스트(pool)를 기반으로 인권리스크가 높은 지표를 반영하여 최종 기관운영 평가지표를 선정 및 확정함
- 2025년 기관운영(9개 분야)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실시 결과, 평가지표 총 129개 중 예 118개, 보완필요 4개, 해당없음 7개로 인권영향평가 종합결과 98.4%를 획득함
- 2025년 주요사업(2개)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실시 결과, ‘한강수계 수변녹지조성 관리사업 역무대행사업’은 평가지표 총 18개 중 예 18개로 인권영향평가 종합결과 100.0%를 획득하였고, ‘환경교육 강화 법정대행사업’은 평가지표 총 14개 중 예 14개로 인권영향평가 종합결과 100.0%를 획득함
- 기관운영 및 주요사업에 대한 인권영향평가 결과와 전체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인권실태조사 및 이해관계자 심층 인터뷰를 통해 도출된 개선과제를 심각도와 발생가능성을 종합하여 중대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합계 점수가 높은 3개의 이슈(①인권경영 구제절차 운영의 실효성 제고(중복), ②직장 내 성희롱성폭력 예방 매뉴얼 마련, ③조직구성원의 인권감수성 향상을 위한 개선방안 마련)를 주요 인권이슈로 선정함
- 중대성 평가를 통해 선정된 주요 인권이슈는 우선적으로 대응계획을 마련하여 개선 및 보완할 필요가 있으며, 사전 예방 활동을 통한 인권리스크 관리를 지속적으로 강화할 필요 있음